

농지임대차계약서

임대인과 임차인은 농지법 제 24 조에 따라 아래 농지의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체결합니다.

■ 농지의 표시

소재지	
지 목	☐ 전(밭) ☐ 답(논) ☐ 과수원 ☐ 기타 ()
면적 / 범위	㎡ (약 평) ☐ 전부 ☐ 일부
경작 현황	☐ 노지 ☐ 시설(비닐하우스·온실) ☐ 다년생식물
부속 시설	☐ 없음 ☐ 있음 ()

■ 계약 내용

재배 작물	
임 차 료	연 금 원 · 매년 월 일 지급
임대차 기간	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 (년) 3 년 이상 (다년생식물·고정식온실·비닐하우스는 5 년 이상)
농지개량·시설	☐ 임대인 서면 동의 후 가능 ☐ 불가
원상회복	☐ 필요 ☐ 불필요 (설치물은 협의 처리)
계약 갱신	만료 3 개월 전까지 임대인의 거절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.

■ 임대인

성명(법인명)		주민(법인)번호	
주 소			
연 락 처		이 메 일	

■ 임차인

성명(법인명)		주민(법인)번호	
주 소			
연 락 처		이 메 일	
농업경영체 번호			

■ 특약사항

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통을 작성하고,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·날인한 뒤 각 1 통씩 보관합니다.

20 11월 11월 11월

일 대 인 (서명 또는 인)

임 차 인 (서명 또는 인)

■ 시·구·읍·면장 확인란

확인 기관		확인 일	20 년 월 일
-------	--	------	-------------------

40지번 제 24 조 제 2 항 - 이 확인을 받고 농지를 넘겨받으면 그다음 날부터 새 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

농지를 빌리기 전에 확인할 것

- 농지는 농지법 제 23 조가 정한 경우(60 세 이상·상속농지·농지은행 위탁 등)에만 빌려줄 수 있습니다.
- 기간은 3 년 이상, 다년생식물·고정식온실·비닐하우스는 5 년 이상입니다.
- 시·구·읍·면장 확인을 받고 농지를 넘겨받아야 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지킵니다.
- 임차인은 농지대장 등재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함께 확인하세요(직불금 신청에 필요).